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37호 2023. 8. 16. (수)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3-973호 정선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1
- 정선군 공고 제2023-983호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7
- 정선군 공고 제2023-98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
- 정선군 공고 제2023-98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22
- 정선군 공고 제2023-987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30
- 정선군 공고 제2023-989호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9
- 정선군 공고 제2023-997호 도로구역 변경(안) 공람공고.....45
- 정선군 공고 제2023-99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46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17호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99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18호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10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3-973호

## 정선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일부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정 선 군 수

### 1. 제정이유

- 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 강화
- 나. 우리군 특성 및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 ~ 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안 제7조 ~ 제8조)

### 3. 제정 조례안 : 별첨

### 4. 입법예고 : 2023. 08. 04. ~ 2023. 08. 24.(20일간)

###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8월 2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총무행정관)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 연락처 : 전화(033-560-2236), 팩스(033-560-2590)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2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특성과 정선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자치경찰 선진화를 위한 견학 및 교육 지원방안
6.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선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선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 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 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선군의회, 정선경찰서, 정선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정선군 공고 제2023-983호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기한(2025년 3월 31일까지)에 따라 상권활성화재단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존속기한 연장(안 제11조)
  -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 8. 8. ~ 8. 28.(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 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경제과

- 연락처 : 전화(033-560-2440), 팩스(033-560-2594)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5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존속기한) 재단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다만,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1조(존속기한) -----  <u>2025년 12월 31일</u>-----.  -- , -----  -----  --.</p>

정선군 공고 제2023-98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2023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등 추가정원 반영을 통한 국가정책사업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668명 → 670명 (증 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55명 → 654명 (감 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 → 16명 (증 3명)

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2)

- 일반직공무원 6급 : 24% 이내 → 26% 이내
- 일반직공무원 9급 : 14% 이상 → 12% 이상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14일(7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외의 부분중 “668명”을 “670명”으로 한다.

별표2와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5% 이내	26% 이내	30% 이내	25% 이내	12% 이상	1%이내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5% 이내	85%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70	670				
정무직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44	644				
4급	4	3		1		
4급·5급	1					1
5급	32	18	2	2	2	8
6급 이하 계	606	606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직 계	5	5				
연구관						
연구사	5	5				
지도직 계	20	20				
지도관	3			3		
지도사	17	17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총지출액 변동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668명 → 670명 (증 2명)
  - 관련 조문 : 안 제2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2명이 증원되고 매년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대비 1.7% 상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2023년 비용추계 판단기준은 2023년 총액인건비 중 일반직 1인당 평균 인건비(78,330천원)를 적용

#### 나. 추계 결과

- 2023년 : 78,330천원 X 2명 = 156,660천원
- 2024년 : 79,660천원 X 2명 = 159,320천원
- 2025년 : 81,010천원 X 2명 = 162,020천원
- 2026년 : 82,380천원 X 2명 = 164,760천원
- 2027년 : 83,780천원 X 2명 = 167,560천원

### 3. 관련 의견

- 해마다 공무원 보수 상승률 변경에 따라 비용추계가 변경될 수 있음

**총무행정관 전 증 표**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의존 재원	소 계	156,660	159,320	162,020	164,760	167,560	810,320
	보조금						
	지 방 교부세	156,660	159,320	162,020	164,760	167,560	810,32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2. 관련의견

- 일반직 공무원 2명 증원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반영 보통교부세로 교부

### 3. 협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2023년 기준인건비 기준 정원 통보(행정안전부) : 2022. 11. 29.

### 4. 작 성 자

총무행정관 전 증 표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8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655명</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b>670명</b>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b>1. 집행기관의 정원 : 654명</b></p> <p><b>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b></p>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3.(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정선군 공고 제2023-98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2023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등 추가정원 반영을 통한 국가정책사업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별표)

○ 총 668명 ⇒ 총 670명 (증 2명)

- 2023년 의회 정책지원 인력 정원 반영 : 2명

◦ 지방행정주사보 2명

- 부서별 인력 재배치 : 12명 (조정내역 참조)

- 재난관리평가 지표 반영 : 방재안전직렬 직급 복수 추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방재안전사무관

◦ 지방행정주사·지방방재안전주사

◦ 지방행정서기보·지방방재안전서기보

- 관리운영직 결원 일반직 전환 : 2명

◦ 사무운영 7급 → 행정 7급

◦ 기계운영 7급 → 운전 7급

나. 부서별 조정내역

정선군의회 (정책지원팀 신설)	기획관 (인구정책)	가족행복과 (도서관운영)	복지과 (경로복지)
증 1명 (지방행정주사) 1	증 1명 (지방행정주사보) 1	증 2명 (지방행정·사서서기보) 2	증 1명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
경제과 (경제정책)	관광과 (관광기획)	문화체육과 (체육진흥)	농업정책과 (농촌활력) ※농촌협약 전제이행조건
증 1명 (지방행정·세무서기) 1	증 1명 (지방행정주사보) 1	증 2명 (지방행정주사보) 1 (지방행정서기보) 1	증 2명 (지방행정·공업서기보) 1 (지방농업서기보) 1
환경과 (환경보전)			안전과
증 1명 (지방시설·토목운영서기) 1			감 1명 (지방토목운영서기보) 1
산림과	정선읍	사북읍	신동읍
감 1명 (지방행정주사보) 1	감 1명 (지방행정주사보) 1	감 2명 (지방행정주사보) 1 (지방행정·세무서기) 1	감 2명 (지방행정서기보)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
화암면	남 면	여량면	북평면
감 1명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	감 2명 (지방행정주사보) 1 (지방농업서기보) 1	감 1명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	감 1명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

다. 정원 상계조정 내역

현 행	산림과 지방행정주사보 1명	신동읍·화암면 지방사회복지서기보 2명	북평면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명	안전과 지방토목운영서기보 1명
조 정	정선군의회 지방행정주사 1명	가족행복과 지방행정·사서서기보 2명	농업정책과 지방행정·공업서기보 1명	환경과 지방시설·토목운영서기 1명
현 행	유통축산과 지방운전주사보 1명	농업기술센터 지방행정·농업서기 1명	보건소 지방보건서기보 1명	정선군의회 지방속기서기보 1명
조 정	농업기술센터 지방운전주사보 1명	유통축산과 지방행정·농업서기 1명	보건소 지방보건·환경서기보 1명	정선군의회 지방행정서기 1명
현 행	도시과 지방토목운영주사보 1명	환경과 지방환경·방재안전서기 1명	세무과 지방사무운영주사보 1명	고한읍 지방기계운영주사보 1명
조 정	환경과 지방시설·전기운영서기 1명	도시과 지방환경·시설서기 1명	세무과 지방행정주사보 1명	고한읍 지방공업·기계운영서기 1명

##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14일(7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총지출액 변동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668명 → 670명 (증 2명)
  - 관련 조문 : 안 제2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2명이 증원되고 매년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대비 1.7% 상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2023년 비용추계 판단기준은 2023년 총액인건비 중 일반직 1인당 평균 인건비(78,330천원)를 적용

#### 나. 추계 결과

- 2023년 : 78,330천원 X 2명 = 156,660천원
- 2024년 : 79,660천원 X 2명 = 159,320천원
- 2025년 : 81,010천원 X 2명 = 162,020천원
- 2026년 : 82,380천원 X 2명 = 164,760천원
- 2027년 : 83,780천원 X 2명 = 167,560천원

### 3. 관련 의견

- 해마다 공무원 보수 상승률 변경에 따라 비용추계가 변경될 수 있음

**총무행정관 전 증 표**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원조달방안

###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의존 재원	소 계	156,660	159,320	162,020	164,760	167,560	810,320
	보조금						
	지 방 교부세	156,660	159,320	162,020	164,760	167,560	810,32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2. 관련의견

- 일반직 공무원 2명 증원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반영 보통교부세로 교부

### 3. 협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2023년 기준인건비 기준 정원 통보(행정안전부) : 2022. 11. 29.

### 4. 작 성 자

총무행정관 전 증 표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3.(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정선군 공고 제2023-987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조정 내역 및 재난관리 평가지표 반영 추진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업무분장표 중 안전과 소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건설과로 조정

나. 재난관리 평가지표 반영

- 방재안전직 최고급수 복수 정원 책정(안 제4조제2항)
- 반영정원 : 5급(행정국 안전과장 직위 복수로 조정)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14일(7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 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본청 업무분장표(제6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기획관	(생략)
총무행정관	(생략)
행정국장	(생략)
회계과	(생략)
세무과	(생략)
민원과	(생략)
가족행복과	(생략)
복지과	(생략)
경제과	(생략)
안전과	1 안전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통제관 : 안전과장)
	3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4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일반사항
	5 안전문화 운동 추진 및 홍보, 안전점검의 날 운영
	6 안전관련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약 및 지원
	7 소방관련 시설 및 의용소방대 지원관리
	8 시설물, 대형사업장 안전관리지도 및 재난 예방
	9 특정관리대상물 조사 및 관리업무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점점검 및 유지관리
	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시행
	12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점검
	13 물놀이 관리지역 지정·관리
	1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15 승강기 관련 업무
	16 긴급구조·구난 관련기관의 협조 및 지원
	17 군민 안전관련 시책·사업 추진(군민 안전보험 지원 등)
	18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19 사회재난 대응·수습 복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0 사회재난 관련 위험시설·지역 지정관리
	21 사회재난 관련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의 장·단기 계획 수립

22	사회재난 피해조사 및 원인분석
23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
24	지역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 수립 및 추진
25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및 사회재난 재난지원금 관리
26	재난관련 통신 운영
27	사회재난 상황관리
28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관리
29	재난관련 특별교부세 운용관리
30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31	재난관리평가 추진
32	지역안전지수 관리
33	국가 기반보호체계 업무에 관한 사항
34	재해 대비·대응
35	자연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통제관 : 안전과장)
36	방재시설물 점검 관리
37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
38	수방자재 관리
39	풍수해 보험 및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관리
40	지진대비 업무
41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운영
42	자연재난 상황관리
43	자연재난 지역안전도 진단
44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45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46	중대시민재해재해 예방 계획 수립(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47	정선군 보건 관련 계획 수립(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48	위험성평가(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49	사업장 안전보건순회점검(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0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1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통계관리(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2	중대시민재해 안전, 보건 관리 업무 의무 이행 안내/점검 및 결과 보고(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비 및 개최(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4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5	중대산업재해 분야 반기별 점검 및 보고(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6	종사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점검(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7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8	정선군 근로자의 건강관리(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9	산업보건의 위탁,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60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61	주민신고망 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2	인력동원 및 자원조사 관리
	63	전시대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 통제
	64	충무계획 조정·통제
	65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인도에 관한 사항
	66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67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68	통합방위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9	평시 병무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시설국장		(생 략)
관광과		(생 략)
문화체육과		(생 략)
전략산업과		(생 략)
농업정책과		(생 략)
유통축산과		(생 략)
환경과		(생 략)
산림과		(생 략)
건설과	1~54	(생 략)
	5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도시과		(생 략)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정원 및 기존 사무분장의 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총무행정관 전 증 표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생략)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3-989호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 “그 밖의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모호한 조문 삭제 등 해촉요건 명확화

2. 주요내용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제1항)
  -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제9조제2항)

- 위원의 해촉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제1항)
- 위원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도 해촉 가능하도록 신설(안 제10조제1항제6호)

3. 일괄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입법예고 : 2023. 8. 9. ~ 2023. 8. 29. (20일)

#### 6. 의견제출

#####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기일 : 2023년 8월 29일 까지

##### 다.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기획관실

- 연락처 : 전화(033-560-2216), 팩스(033-560-2592)
- E-mail : hyeo1201@korea.kr,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관실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  
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  
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  
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원이 제9조제1항,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  
을 해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u>제9조(제척·회피 등) ①</u>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u>②</u> 위원장은 위원에게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p> <p><u>③</u>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p>	<p><u>제9조(제척·기피·회피) ①</u>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li> <li>2. <u>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u></li> <li>3. <u>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u></li> <li>4. <u>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u></li> <li>5. <u>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u></li> </ol> <p><u>②</u>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p> <p><u>③</u>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현 행	개정안
<p><u>제10조(위촉해제) ①</u> <u>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u></p> <p>1. ~ 4. (생략)</p> <p>5. <u>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u>&lt;신설&gt;</u></p> <p>② (생략)</p>	<p><u>제10조(위원의 해촉) ①</u> <u>군수는 다른 조</u> <u>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u> <u>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u> <u>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u> <u>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6. <u>위원이 제9조 제1항, 제3항에 해당</u> <u>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u> <u>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p>

정선군 공고 제2023-997호

도로구역 변경(안) 공람공고

군계획시설 소로 1-16호(舊 국도 42호선)에 지정되어 있는 도로구역 변경을 위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6조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하고자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0일

정 선 군 수

1. 도로구역 변경(안)

- 군계획시설 소로1-16호(舊 국도 42호선)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소로1-16호	비고	舊 국도 42호선
도로구역의 변경 범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76-5번지(감 42㎡)				
도로구역 변경목적	군계획시설 소로1-16호로 지정된 도로구역에 대하여 주민 재산권보호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변경(감 42㎡)하고자 함.(편입면적 축소)				
비고	도시지역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3년 8월 11일 ~ 2023년 8월 26일

나. 공람 및 의견제출장소 : 정선군청 건설과(☎ 033-560-2485)

3. 기타 세부사항은 정선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3-99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에 따라 정선군 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 등을 정비하고,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조항을 정비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공무원 임용절차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확대 (안 제6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요건 추가
- 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추가(안 제6조)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추가 반영
- 다. 시험위원 위촉 제한 요건 추가(안 제11조)
  - 해당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으로 요건 추가
- 라. 응시요건(자격증) 정비(안 제14조)
  - 녹지 직렬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을 담당하는 ‘나무의사’ 추가
  - ※ 단, 수목 피해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산림이용 직류는 제외
- 마.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절차 신설(안 제15조의 2)
  - 외부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절차 전 과정에 대한 점검 의무 신설
- 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 경력 가산점 부여 의무화 신설(안 별표22)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최대 0.7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 임용직급별 경력 자율적 결정[별표 6, 별표 7]
- 3년의 범위 → 기간 자율 설정

###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30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제6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4조제2항 본문 중 “별표12”를 “별표 12”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조치
-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 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8조 중 “영제17조제1항제3호” 를 “영 제17조제1항제3호” 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별지 제9호 서식” 을 “별지 제9호서식” 으로 한다.

별표 6, 별표 7, 별표 13,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23.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5조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 2. 별표 13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한다.

## [별표 6]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 입상자 (2년)

## 2. 삭제

## 비 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7]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정	운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데이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관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안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프린팅,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안전, 품질경영, 사출금형, 관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컴퓨터응용선반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장비정비, 자동차정비, 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관금제관, 농 기계정비, 농기계 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관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관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 인운전, 로더운전, 플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셔운 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웨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 용접, 금형, 기계정비, 관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선	기술사 :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야 금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일반화학	<p>기술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농 업	자 원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p>
	일반농업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벼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잠 업	<p>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농 화 학	<p>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벼섯종균, 축산, 식품가공</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산업기사 :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 해방지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 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 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 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 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 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 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 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 틱창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 자 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 산업기사 : 경 기 능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 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 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 리	기 능 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북어) 기 능 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북어)
위생	사 역	기 능 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 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 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재 경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 관리자(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 관리자(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 관리자(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 회 복 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 (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약사(3)	약사		
	약 제		한약사(7)	한약사(3)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3)	수의사	위생사(2)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 질		수의사(7)	약사(3)	약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대 기		약사(7)	위생사(8)	위생사(5)	2급	
	폐 기 물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 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 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 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 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 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3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 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3]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관련)

##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자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공 업	기계운전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 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산업기사자격증 가 산 비 율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p>기 술 사 : 조선</p> <p>기 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p>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일반전기	<p>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 능 장 : 전기</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공 업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야 금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일반화공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p>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잡업	기사 :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화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가축인공수정 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 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 자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 의사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 의사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 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제조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시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보 건	방 역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p>
식품위생	식품위생	<p>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p>
의료기술	의료기술	<p>기술사: 방사선관리</p> <p>기사: 의공</p> <p>산업기사: 의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p>
환 경	일반환경	<p>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환 경	수 질	<p>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 측정분석사(수질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장수시설운영관리사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장수시설운영관리사2급</p> <p>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p>
	대 기	<p>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 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폐 기 물	<p>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시 설	도시계획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일반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 설	건 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 사
	측 지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 시설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 자 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 사
방송통신	통 신 사	<p>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통신기술	<p>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송기술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 기술	<p>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p>	
시설관리	시설관리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p>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농촌지도	농업기계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공업연구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화 공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화 학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농업연구	산업경영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물 리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p>	
	농식품 개발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작 물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삭제>
	농 업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근층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녹지연구	임 업	<p>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p>기술사 : 축산</p> <p>기사 : 축산</p>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 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 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 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 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 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시설연구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p>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22]

일반직 공무원의 가산점 대상 자격증 등 구분표

1. 가산점 대상 자격증 및 등급별 가산점

○ 5급부터 9급까지

직렬 \ 계급	5 급	6급 · 7급	8급 · 9급
행정, 세무, 교육 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기) 업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축,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공 (전) 업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직렬	계급	5 급	6급·7급	8급·9급
공 (금 속)	업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면,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섬 유)	업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화 가 스)	업 (공 공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자 원)	업 (자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농 업)	업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축 산)	업 (축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농 (지 의)	업 (지 의)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수 산)	업 (수 산)	수지사		
해양 (수 산)	업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향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향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해양 (선 박)	업 (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향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향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의)	업 (건 의)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 (위 생)	업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 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 설 (토목, 수 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 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자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p>기계운영</p>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 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 관리, 소방설비&lt;기계분야&gt;,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 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p>	<p>산업기사(유탄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 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 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 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 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 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 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 정관리, 소방설비&lt;기계분야&gt;, 품질관리, 영사)</p>
<p>화공운영</p>	<p>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학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 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p>	<p>산업기사(공업화학, 화학류 제 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 질관리, 식품)</p>
<p>가스운영</p>	<p>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 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p>	<p>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 제품제조)</p>
<p>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p>	<p>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 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p>	<p>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 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p>
<p>농림운영</p>	<p>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 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 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 공학) 기능장(산림)</p>	<p>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p>
<p>보건운영</p>	<p>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 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 급</p>

○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계, 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업연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업연구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
해양수산연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연 구 사
환경 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 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 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 지도사

직렬	계급	지 도 사
농 촌 지 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 촌 지 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 ○ 자격증의 등급별 가산점

구 분	가 산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 2. 근무경력 및 실적가산점

가산점항목	부 여 기 준	배 점	산 정 방 법
I.안보업무자등	1.계획인사교류에 의한 인사교류자	월0.1점 (최대2.4점)	1년 초과부터 매월
	2.중앙부처 파견 근무자	월0.1점 (최대2.4점)	1년 초과부터 매월
II.전문관	1.전문직위 전문관 선발자	월0.10점 월0.12점 월0.15점	전문직위 선정에 따른 전문관 선발자
	① 3년 초과 4년 미만		
	② 4년 초과 5년 미만		
③ 5년 이상			
III.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 부여한다. 다만, 가산점 부여 직위는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로써,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월 0.05점 (최대0.75점)	2년 초과부터 매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li> <li>2. 「자연재해대책법」</li> <li>3. 「소하천정비법」</li> <li>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li> <li>5. 「재해구호법」</li> <li>6. 「유선 및 도선 사업법」</li> <li>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li> <li>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li> <li>9. 「승강기 안전관리법」</li> <li>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li> <li>11. 「풍수해보험법」</li> <li>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li> <li>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li> </ol>		

가산점항목	부 여 기 준	배 점	산 정 방 법
IV. 업무추진 실적우수	1.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단위의 평가 등을 통해 기관 포상을 받은 부서의 직원 ① 최우수상 ② 우수상 ③ 장려상	0.5점 0.3점 0.2점	수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담당 및 담당자만 인정 - 수상부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인정 - 포상구분이 없을 경우 포상 훈격으로 부여 (대통령:0.3, 국무총리:0.2, 장관:0.1)
	2. 저서출판 또는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① 저서출판 ② 논문게재	0.2점 0.1점	담당직무와 관련된 저서 및 논문만 인정 (학위논문 제외) - 저서 및 논문은 각각 1회만 인정
	3.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각급기관 및 공익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경진대회, 발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직원	1회당 0.3점	교육 중 발표 제외 -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서 실적가점으로 인정된 경우
	4. 담당직무 또는 담당마을과 관련된 집단민원(고질, 장기 등)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한 직원	1.0점	해당 공무원
	5. 평정대상 기간 중 주민으로부터 3회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격려 또는 감사를 표명하는 서신(패, 감사장 등)을 받을 시	0.5점	해당공무원
	6. 군정 주요시책 추진(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국비확보, 세원발굴, 주요 현안 해결, 공약사업 해결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둔 경우	0.5점	해당공무원 - 군정 주요시책 추진 평가서(부서장 확인)에 따라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서 실적가점으로 인정된 경우
V. 업무관련 창안	1. 정부제안규정 및 군 제안규칙에 의하여 담당업무관련 제안 채택된 직원 ① 금 상 ② 은 상 ③ 동 상 ④ 장려상	1.0점 0.8점 0.5점 0.3점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부제안자는 배점의 1/2을 인정 - 제안에 따른 개인포상 및 승진자에 대해서는 가산점 제외

가산점항목	부여기준	배점	산정방법
VI. 세수(稅收) 증대 및 예산절감	1. 예산절감 및 지방세 징수에 기여하여 포상금을 받은 직원	포상금 수령액 100만원당 0.1점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포상금의 가산점은 세무7급 이하만 적용
	2. 감사원, 중앙부처 및 자체감사 결과 예산절약 금액이 인정된 직원 ① 1억 미만 ② 1억 이상 10억 미만 ③ 10억 이상 20억 미만 ④ 20억 이상	0.3점 0.5점 0.8점 0.8~1.0점	예산절감에 직접 기여한 직원만 인정
VII. 업무유공 개인포상 수상	1. 훈장 2. 포장 3. 대통령 표창 4. 총리 표창(정부모범 제외)	1.5점 1.0점 0.7점 0.5점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받은 포상만 인정 - 포상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가산점이 제일 높은 것 1개만 인정
VIII. 다자녀 출산 공무원 우대	1. 다자녀(3자녀 이상)를 출산한 공무원	1.0점	부부 공무원의 경우, 각각 가산점 부여
IX.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 적극행정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직원	1.0점	주관부서의 통보에 의거 실적 가산점 심사 시 반영
	X. 시책발굴 우수공무원	1. 신규 시책사업 발굴에 기여한 직원 ① 대상 ② 최우수 ③ 우수 ④ 장려	

※ 평정 대상기간 중의 실적에 한하며, 1인이 여러 항목의 가산점 부여 대상자인 경우 부여점수가 가장 높은 1개 항목의 점수만 인정함.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응시번호		<b>응 시 표</b> (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응시수수료) ① (생 략)</p> <p>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lt;신 설&gt;</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6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u></p> <p>③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p> <p>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p>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 한다.

③ 삭 제

④ (생 략)

<신 설>

-----  
 -----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  
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  
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  
양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  
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  
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  
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  
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  
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



##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 4. 작성자

총무행정관 전 증 표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응시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 삭제

③ 삭제

④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⑤ 삭제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①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제6조의2 (응시수수료)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2조 (시험위원)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 14 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17호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9일

정선군의회회의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그 외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 조문 수정(안 제2조)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제2목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제2호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사항 반영(안 제4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대한 심사

3. 예고기간 : 2023. 8. 9. ~ 8. 14.(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acesd07@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의회 조례 제 호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제2목”을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대한 심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제2목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위원회를 말한다.</p> <p>제4조(특별위원회 설치)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사항의 효율적 심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lt;신 설&gt;</p> <p>1. ~ 6. (생 략)</p>	<p>제2조(정의) ----- -----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제2호----- -----.</p> <p>제4조(특별위원회 설치) ----- ----- -----.</p> <p>1. <u>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대한 심사</u></p> <p>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18호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9일

정선군의회의회장

1. 개정이유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여건 변화 및 물가 상승으로 도시가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비용 부담 완화
-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상이등급 제한을 해제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안 제5조)
  - 가구당 50퍼센트 최고 150만원 ⇒ 70퍼센트 최고 2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한액 200만원 ⇒ 300만원
-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안 제6조)
  -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 ⇒ 등급제한 없음

3. 예고기간 : 2023. 8. 9. ~ 8. 14.(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17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sbonnie@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50퍼센트” 를 “70퍼센트” 로, “150만원” 을 “200만원”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0만원” 을 “300만원”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① (생략)</p> <p>②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시설분담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중 <u>50퍼센트</u>를 세대 및 시설당 최고 <u>150만원</u>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는 세대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u>200만원</u>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세대당 1회에 한한다.</p> <p>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군에 주소리를 두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신청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세입자가 도시가스 공급 요청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한다.</p> <p>1. (생략)</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1급부터 3급까지의</p>	<p>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70퍼센트</u>----- <u>200만원</u>----- ----- ----- <u>300만원</u>----- -----.</p> <p>제6조(지원대상) ①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p>

<p><u>상이자(傷痍者)</u></p> <p>3. ~ 8.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u>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u></p> <p><u>5·18민주화운동부상자</u></p> <p>3. ~ 8.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 관 계 법 령

## □ 도시가스사업법

##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9.12.10] [[시행일 2020.3.1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